

## 대전 스카이자이르네 근린생활시설 중도금대출 신청 안내

<b>대출대상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사업자로 계약금 10%이상 납부한 분양계약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농협 대출 대상자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																		
<b>대출금리</b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 <th style="width: 3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기준금리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가산금리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대출금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월중신규 COFIX 6개월변동</td> <td>실행시점 기준금리</td> <td>@ %</td> <td><u>연 6.3%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대출실행시점의 기준금리 + 가산금리(@) = 6.3% 금리 적용되며,  <b>대출 실행 후 6개월 주기로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.</b>          ※ 입점지정 개시일 부터 이자 납부의무는 고객에게 있습니다. (중도금무이자 적용)</p>				구 분	기준금리	가산금리	대출금리	월중신규 COFIX 6개월변동	실행시점 기준금리	@ %	<u>연 6.3%</u>							
구 분	기준금리	가산금리	대출금리																
월중신규 COFIX 6개월변동	실행시점 기준금리	@ %	<u>연 6.3%</u>																
<b>대출한도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분양금액의 30% 이내(중도금1~4회차) ※ 정부의 정책, 당행 대출 규정,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						
<b>대출기간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2026년 1월까지 (26개월, 입점지정일+6개월)																		
<b>상환방법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만기일시상환 (대출원금 만기 일시상환 / 대출이자 매 1개월 후취로 납부)																		
<b>부대비용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인지(50% 고객부담) : 75,000원 (자서완료 후 안내받는 농협 인지세납부계좌에 이체) <input type="checkbox"/> 중도상환수수료 : 면제																		
<b>대출서류접수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기간 : 12월 8일(금) ~ 12월 9일(토) [2일간] 10:00 ~ 16:00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소 : 대전 스카이자이르네 모델하우스 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7)																		
<b>유의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이거나 당 행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, 부채,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■ 중도금대출기간 이내라도 대출신청인에게 연체정보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대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■ 정부정책, 금융시장 환경변화 및 신청인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자격, 대출한도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■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 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■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■ 이자납입 지연 시 대출이자율+연3%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, 최고 연 18%의 연체이자 발생됩니다.</li> <li>■ 중도금대출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.</li> <li>■ 향후 잔금대출 전환 시 RTI산정, 기업신용평가기준 등 규제가 적용되어 잔금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■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<b>담당영업점</b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 <th style="width: 25%;">금융기관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담당자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문의전화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팩 스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지도농협</td> <td>윤상아 계장</td> <td>031-931-1617</td> <td>031-974-313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통영축협충무지점</td> <td>조승만 계장</td> <td>055-640-1825</td> <td>055-641-0509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금융기관	담당자	문의전화	팩 스	비 고	지도농협	윤상아 계장	031-931-1617	031-974-3130		통영축협충무지점	조승만 계장	055-640-1825	055-641-0509	
금융기관	담당자	문의전화	팩 스	비 고															
지도농협	윤상아 계장	031-931-1617	031-974-3130																
통영축협충무지점	조승만 계장	055-640-1825	055-641-0509																

공 통 서 류

- ① 분양계약서 원본, 계약금(10%) 납부영수증(시행사 확인자료)
- ②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, 인감도장
- ③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 
 ※ **분양계약서상 서명날인 한 경우 '본인서명 사실확인서'(용도에 중도금대출용 기재)**
- ④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및 관계 모두 표시)
- ⑤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사항, 인적사항변동내역 포함)
- ⑥ 국세완납증명서
- ⑦ 지방세완납증명서
- ⑧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
-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)
- ⑩ 사업자등록증(사본가능)
- ※ 모든 서류는 **2023년 11월 21일 이후** 발급분만 인정
- ※ **공동명의자(공통서류 각각준비)**

소 득 증 빙 서 류

제출서류

급여소득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재직증명서(직인필)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필, 최근 2개년 2021년, 2022년) 또는 소득금액증명원(최근2개년 2021년, 2022년) *단기재직자는 월급여명세표(3개월분, 회사직인필) & 급여통장 급여이체 거래내역서(은행직인필) 첨부하여 소득 증빙
사업소득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등록증(사본)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금액증명원(최근 2개년 2021년, 2022년), 신규사업자는 건강·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6개월) 제출
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	<input type="checkbox"/> 위촉계약서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금액증명원(최근 2개년 2021년, 2022년),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
연금소득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금증서(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금증서 상 연금수령액 미 표기 시 통장거래내역서 제출
기타소득자 (무소득자 포함)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소득자(무소득자)는 세무서의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반드시 제출 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실증명원 발급 후 아래 ㉠,㉡,㉢ 중 증빙 가능한 자료 함께 제출 ㉠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☞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만 인정, 최근 6개월 보험료납부내역 ㉡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☞ 최근 6개월 보험료납부내역 ㉢ 전년도 신용카드소득공제확인서(체크카드포함) ☞ 국세청발급 직전년도 연말정산용 확인서 또는 카드사 발급 최근 1년간 사용실적표 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인피부양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생략 가능